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53281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6,775,828원과 그 중 154,380,678원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2. 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8.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0. 8. 24. 접수 제1106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8. 9. 3.	E	162,000,000원 보증비율 : 90%	2019. 9. 3. (2020. 9. 3.까지 연장)

2) 이 사건 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153,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2020. 7. 17. 의정부지방법원 2020하합107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5) 원고는 2020. 10. 22.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에 154,380,6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6) 원고가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073,230원이고, 소외 회사가 위 보증기한까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은 321,920원이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

피고 A은 2020. 8. 19.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10618호로 피고 주식회사 B를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정상태

1) 적극재산

피고 A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8. 당시 가액은 405,000,000원이다.

2) 소극재산

피고 A이 2020. 8.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① 주식회사 D에 대한 219,126,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 ②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198,451,199원의 물품대금 등 채무
- ③ F은행, G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10개의 채무금 합계 1,640,306,000원
- ④ 원고에 대한 153,000,000원의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채무
- ① 내지 ④의 합계: 2,210,883,199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법원전산정보센터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156,775,828원과 그 중 154,380,678원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2. 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154,380,678원의 구상금채권은 2020. 10. 22.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것이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약정은 2018. 9. 3. 체결되었고, 피고 A은 2020. 7. 17. 파산신청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2020. 8. 19.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소극재산이 2,210,883,199원으로서 적극재산인 405,000,000원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등

1)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자신이 2015. 7.경부터 소외회사에 전기공사와 관련된 설비를 계속하여 공급하고 수시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결제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며, 2020. 2. 28.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의 결과로서 잔존하는 198,451,199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전력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록된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7. 1.경부터 소외회사에게 배전판 등 전기공사에 관련된 설비를 계속하여 공급하였고, 수시로 그 대금 결제를 받아가면서 마지막으로 2020. 2. 28.자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아 198,451,199원의 잔존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D를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였다가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새롭게 공시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받는 피고 주식회사 B로서도 이와 같이 등기부상 공시된 담보설정의 내역을 통하여 소외회사가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온 일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소외회사는 그 이외에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한 주식회사 D뿐만 아니라 F은행, G조합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0여건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 합계가 2,210,883,199원에 달하고, 2020. 7. 17. 파산신청을 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그 이전부터 재정상태는 악화되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비록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외회사와 정상적인 물품판매 거래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규모의 채무를 다수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도 그러한 기록의 일부를 남긴 소외회사에게 2017년 무렵부터 물품을 공급하고 수시로 일부 물품대금의 결제를 받아온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수익자로서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사정이 입증되어 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8.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0. 8. 24. 접수 제1106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별지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I에 있는 J아파트 K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L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M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층 N호 128.17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I 대 21907.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1907.5분의 90.013

- 끝 -

